

## 그룹 내부고발자 정책 - 그룹 신고 절차

### 1. 목표

동 정책(이하 “정책”)은 법과 규제, Pirelli & C. S.p.A. 및 자회사(이하 “Pirelli” 또는 “그룹”)의 윤리강령에 규정된 가치 및 원칙, 내부 통제 원칙, 기업 정책/절차의 위반(또는 위반 유발 요인)에 해당 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하나 이상의 그룹 내 기업과 관련이 있는 동안) 그룹 내 기업과 고객, 주주, 파트너, 위/수탁업체 및 일반적인 커뮤니티에 어떤 종류로든 피해(예: 경제, 환경, 직원 또는 위/수탁 업체의 안전 또는 단순한 명성의 손상)를 입힐 수 있는 위법 행위 또는 누락을 신고하기 위해 수립된 절차입니다(이하 “신고”).

동 정책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충돌하는 현지법과 무관하게 모든 그룹 내 기업의 참조 문서를 구성합니다.

정책의 원칙은 Pirelli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사법, 감독 또는 해당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 또는 각 그룹 회사에 설치된 통제 기구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 2. 대상

정책 적용 대상(이하 “대상” 및 “내부고발자”)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a) 회사 이사회 임원, 그룹 직원
- b) 그룹의 고객, 공급업체, 파트너, 컨설턴트, 주주 및 일반적인 이해관계자(이하 “제3자”).

### 3. 신고

한 개 이상의 그룹 내 기업과 관련있는 자가 업무 활동을 하면서 또는 해당 업무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면서 위법 행위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발견했거나 가능성이 인지되면, 내부고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하여 위반 행위 및 그룹의 원칙에 반한 행위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 사건 및 상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란 법 및 규제, Pirelli 윤리강령에서 정한 가치 및 원칙, 내부 통제 원칙 및 회사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위반 또는 위반 유발 요인에 해당 또는 해당할 수 있는 잠재적 위법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해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irelli는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되, 신고서에는 내부고발자의 이름을 밝힐 것을 권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서에는 신고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데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아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사건의 상세한 설명과 내부고발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 개입된 사람의 이름과 직위 또는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
- 신고서에 작성된 행위를 확인해줄 수 있는 다른 당사자의 이름
- 신고된 행동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해줄 수 있는 기타 문서 참조

밀라노 본사에 위치한 그룹의 **내부 감사부**(이하 "**내부 감사부**")는 신고서 접수 및 검토를 담당합니다.

신고서는 영어 또는 현지어로 작성해 아래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 *이메일*로 보낼 경우, 해당 이메일 주소: [ethics@pirelli.com](mailto:ethics@pirelli.com) – 내부 감사부만 액세스 가능함.
- *우편*으로 보낼 경우: **Pirelli & C. S.p.A. – Viale Piero e Alberto Pirelli, no. 25 – Milan**, *내부 감사 담당자*를 수신자로 지정해야 함.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담당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i) 접수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함, (ii) 내부고발자에게 정책 3에 정해진 내부고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독려함, (iii) 신고서가 서면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ethics@pirelli.com](mailto:ethics@pirelli.com) 로 전달하거나 신고서가 하드카피인 경우에는 우편을 이용해 **Pirelli & C. S.p.A. – Viale Piero e Alberto Pirelli, no. 25 – Milan**으로 *내부 감사 담당자*를 수신자로 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단독으로 분석 및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내부 감사부**는 이메일 [ethics@pirelli.com](mailto:ethics@pirelli.com)을 이용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기록되었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줄 것입니다.

접수된 신고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발신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 4. 비밀유지 및 보복금지

**Pirelli**는 내부고발자가 잠재적인 위법 행위나 비정상적인 행위를 즉각 신고하도록 독려하며 신고서 및 그 안에 포함된 정보의 비밀유지를 보장하며, 신고 내용이 조사 결과 정확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내부고발자와 그 내용을 전달한 사람의 익명성을 보호합니다.

내부고발자, 신고 대상, 또는 신고서의 진위를 조사하는 데 관계된 사람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종류의 위협, 보복, 징계 또는 차별도 용인되지 않습니다.

**Pirelli**는 정책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내부고발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사람 누구에게나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자가 신고서에 진술한 내용에 허위가 있어 형사상 또는 민사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룹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허위, 근거 없는 또는 기회주의적 신고하거나 명예훼손, 비방 또는 신고 대상 또는 신고서에 언급된 대상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회사의 권리, 자산 및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징계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5. 신고서 진위 확인

사안에 관한 현지 법과 관계 없이 **내부 감사부**는 전체 그룹을 대신해 신고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에 대한 중립성, 공정성 및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 감사부*는 사안마다 관련이 있는 회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밀유지를 보장할 수 있을 때 신고 내용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위 확인이 완료되면 *내부 감사부*는 실시된 조사 및 도출한 증거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를 사안에 관계된 부서와 공유하고 그룹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또한, 각 신고에 대해 실시한 조사 및 확인 결과를 해당 내용으로 영향을 받은 부서에 보고합니다.

단, 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신고서에 언급된 증거가 입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 감사부*가 취한 조치에 관한 설명과 함께 내용을 보관합니다.

*내부 감사부*는 접수된 신고의 유형 및 조사활동의 결과를 **Pirelli & C. S.p.A.**의 감사, 리스크, 지속가능성 및 기업 거버넌스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 6. 개인정보의 취급

**Pirelli & C. S.p.A.**는 내부고발자 및 신고 처리 과정에서 입수된 모든 당사자의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배경, 종교 및 철학적 신념, 정치적 의견, 정당 및 노조 가입, 개인의 건강과 성적 지향과 같은 민감한 정보 포함)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그룹의 [글로벌 개인정보보호정책](http://corporate.pirelli.com/corporate/en-ww/governance/principles/global-personal-data-protection-policy)의 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는 오직 신고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정보는 엄격하게 다루질 것입니다. *내부 감사부*는 데이터 통제기관의 자격으로(해당 사안에 대한 현지 법과 무관하게) 정책에서 정한 절차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접수된 신고를 적절히 관리하고 모든 법과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는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권리, 기본 자유권 및 존엄성을 완벽하게 존중하면서 처리될 것입니다.

처리 작업은 *내부 감사부*의 감독을 받으며, 내부고발 절차, 특히 보안조치 및 관련 당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해 특별 교육을 이수하고 데이터 처리 담당자로 정식 임명된 직원에게 맡겨집니다.

*내부 감사부*는 신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회사 이사회 및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부 부서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에 진술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정보가 수집되고 확인이 실시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 대한 적절한 법적 및 징계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신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5년에서 설명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우연히 또는 불법적으로 파기하거나, 분실 또는 무단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또한, 신고에 관한 문서는 하드카피와 디지털 포맷으로 보관하되 정책에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지나서는 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

부회장 겸 CEO

Marco Tronchetti Provera